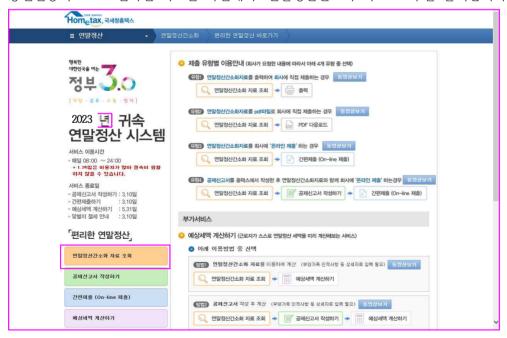
(1)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검색 후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 <u>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바</u>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1) 2023}년 귀속 간편제출방식은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2022년 귀속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 하길 바람

-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클릭한 후 나오는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 후 2023.1.1.부터 2023.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전체선택'을 클릭하고, <u>연도중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로부터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각각 선택한 다음 각 항목의 지출금액을 조회하여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u>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는 1월 20(월)일 이후에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가장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오니 1월 20일부터 조회하여 1월 3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예) <u>2023.1.1.~3.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3.7.15.~12.31.까지 B회사에서 근무한</u>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7월분도 표시함)



*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부양가족 동의하기와 부양가족 서류 제출

1.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 동의부터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서류도 함께 출력이 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부양가족 자료제공'→'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받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서 주민번호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2.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작년까지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 2003.12.31.이전 출생자)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성년인 경우라면 해당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의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②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도중에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과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선택한 후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출력)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③ 근무처선택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공제신고서 클릭 후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화면이 나오면 근무처 선택 후 반영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근무처는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여야지만 조회가 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인적사항 등록후에 조회하여야 하며 근무처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등록도 가능합니다.



(4) Step01.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입력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세대주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를 클릭합니다.



(5) Step02. 부양가족 입력

기본공제 해당여부 등을 Yes 또는 No으로 선택하며 '부양가족 추가'탭을 이용하여 부양가족 추가도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이 충족되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등 의 자료를 조회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본공제 'N'으로 하여 등록함.

(6)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조회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u>'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종이로 수집한 안경구입비 등의 자료도 입력</u>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반영되면 '다음이동'를 클릭합니다.



(7) Step04. 공제신고서 확인

작성된 공제신고서 상의 내용(인적사항,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명세,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확인한 후 '간편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8) 간편제출하기

공제신고서 확인에서 '간편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나온 화면에서 자료제공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한 후 공제신고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춬 후 화면>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회수'를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